

제 2 6 3 회 임 시 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9월 12일(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고 일 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가. 대청호 주변의 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내수면 어업발전 및 수중생태계 보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신축하고
- 나. 산림환경연구소가 임업시험·연구를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포 부지의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연구소에 인접한 사유지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매입하며
- 다. 청주지역의 경찰행정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신설을 지원함 물론 우리도와 경찰청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
-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취득 :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 위 치 :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4필지 18,144m²
 - 건물신축 : 5동 1,790m²(청사, 연구동, 관리사, 기계실)
 - 구조물 : 5식 2,670m²(양어시설, 침전조, 저수조 등)
- 사업기간 : 2007. 9~2008. 12(2년간)
-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700 · 도비 1,300)

나. 재산취득 :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 매입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09번지 일원
- 매입규모 : 26필지 29,368m²
- 사업기간 : 2007. 9~2007. 12(4개월)
- 사업비 : 973,094천원(도비)
- 사업용도 : 임업 연구·시험포 활용

다. 재산의 교환 : 국·공유재산 교환

- 교환시기 : 2007. 9~2007. 12(4개월)
- 교환대상
 - 도유재산 :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16외 4필지 4,821m²
 - 국유재산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764외 5필지 2,750.85m²
- 교환대상
 - 도유재산 : 667,090천원
 - 국유재산 : 802,158천원

※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되 교환차액은 현금 보충함.

4. 검토의견

가.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의 건은 대청호를 비롯한 남부권의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과 수중 생태계 보전 등을 담당할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94번지의 16필지 매입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2007년 3월 1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심의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보완이 요구되어 부동의를 하였던 계획안임.

2007년 9월 3일에 이를 보완하여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계획안을 제출되었음.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94번지의 16필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신서초등학교 폐교부지인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77-2외 3필지로 신축 부지의 변경과 사업규모를 토지매입 17,268㎡에서 18,144㎡로, 건축신축 5동 3,227㎡에서 건축신축 5동 1,790㎡로 그리고 구조물 5식 4,520㎡에서 5식 2,670㎡하고 사업비를 3,995백만원에서 3,000백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임.

본 안건의 적절한 심사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부지와 현재 계획된 부지간의 입지조건, 수량(水量), 투자실익 등에 대한 비교 설명과 사업규모를 축소된 사유와 인접한 축사로 인한 연구의 지장여부를 검토한 내용 그리고 폐교인 신서초등학교 건물의 처리계획과 철거시 전체사업비 중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나.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의 건은 산림환경연구의 요람인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임업시험·연구를 원활히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시험포 부지를 확보하여 임업자원을 활용한 도민들에 삶의 활력소 공간을 증대하는 기초 사업으로 이견은 없음.

다만,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의 효율성 및 체계화를 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과 재정투자계획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는 데, 2007년도 후반기인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다. 국·공유재산 교환

본건은 청주지역의 경찰행정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 (가칭)청주남부경찰서를 신설할 목적으로 도유지인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16번지의외 4필지 4,821㎡와 국유지인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764번지의외 5필지 2,750.85㎡를 상호 교환 취득하려는 것임.

(가칭)청주남부경찰서 건립은 치안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의 교환요구에 의해 국·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에는 의견없음.

다만, 취득의 측면에서 상당구 용정동 764번지의외 3필지 경찰청 관사 신축을 위해 확보한 토지 그리고 흥덕구 분평동 552번지 비축토지에 대한 취득은 실거래 가격에 의한 재산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도유지로 활용가치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취득 토지에

대한 재산의 효용가치, 활용가치 등을 증대할 수 있는 관리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붙임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